

#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

건설부 훈령 제447호

1979년 9월 일  
건설부장관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축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폐쇄처분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고)**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 이외의 경우로서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등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 (성실의 의무등)**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이외의 경우로서 건축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4조 (설계도서의 허위작성등)**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 제1호 나목이외의 경우로서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법하게 설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가중처벌)** 1차 적발시 동일인의 위반사항이 다음일 경우에는 1회 위반으로 하고 동일내용의 위반사항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1 내지 3의 기준에 불구하고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3의 회수 계산은 1개년내에 발생한 회수를 말한다.

**제6조 (연대책임 건축사)** 중간검사 신청이전 (연대 책임건축사가 중간검사 신청서에 날인하기 이전) 및 중간검사를 끝난 후부터 준공검사 신청전까지 발생한 공사감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실제로 공사감리를 한 자만이 그 책임을 진다.

**제7조 (경감)** 별표 3의 2, 공사감리위반 사항중 중간검사 이전에 적출된 위반사항을 건축허가권자의 시정지시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된 경우에는 별표 3( ) 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착공신고)** 건축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의 제출없이 건축주가 일방적으로 사전 착공함으로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청문)**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건축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유사기준조정)** 별표 1 내지 3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1979. 10. 1부터 적용한다.
- (2) 종전의 처분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별표 1) 신고를 태만히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반사항	위반회수처분기준			비고
	1회	2회	3회	
1.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경고	1월	3월	사무소등록
2. 허위신고를 한 경우	1월	3월	6월	요건에 대한 허위신고는 등록취소로 한다.

## (별표 2) 성실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1.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하게 설계를 아니한 경우	6월	1년	등록취소
2. 기타 사항	경고	1월	3월

(별표 3)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법하게 설계등을 하였을 경우

위반사항	위반회수처분기준			비고
	1회	2회	3회	
1. 설계도서 또는 현장확인서의 허위 작성 및 위법설계				
① 대지의면적, 형태등 현장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등에 위반된 사항을 적법한것으로 설계한 경우로서 처분일까지 적법하게 시정이 가능한 경우	6월	1년 등록취소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측량의 착오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한 경우	3월	6월 1년		
2. 공사감리 위반사항				
① 면적				
가. 연면적 $10m^2$ 미만의 변경	경고 (경고)	1월 (경고)	3월 (1월)	
나. 연면적 $10m^2$ 이 상 및 $33m^2$ 미만의 변경	1월 (경고)	3월 (1월)	6월 (3월)	
다. 연면적 $33m^2$ 이 상 및 $66m^2$ 미만의 변경	3월 (1월)	6월 (3월)	1년 (6월)	
라. 연면적 $66m^2$ 이상 및 $100m^2$ 미만의 변경	6월 (3월)	1년 (6월)	등록취소 (1년)	
마. 연면적 $100m^2$ 이상의 변경	1년 (6월)	등록취소 (1년)	면허취소	
바. 연면적 $100m^2$ 이상이고 허가면적의 100%이상의 변경	등록취소 (1년)	면허취소		

위반사항	위반회수처분기준			비고
	1회	2회	3회	
② 건축물의 높이 및 인접대지 경계선 또는 동일대지안의 인접건축물까지의 거리위반 가. 허가보다 $0.5m$ 이하의 변경	1월 (경고)	3월 (1월)	6월 (3월)	
나. 허가보다 $0.5m$ 초과 $1m$ 이하의 변경	3월 (1월)	6월 (3월)	1년 (6월)	
다. 허가보다 1초과하는 변경	6월 (3월)	1년 (6월)	등록취소 (1년)	
③ 지하실의 높이위반 가. 반자높이 $40cm$ 이하 낮게한 경우	1월 (경고)	3월 (1월)	6월 (3월)	
나. 반자높이 $40cm$ 초과 낮게한 경우	3월 (1월)	6월 (3월)	1년 (6월)	
다.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 $50cm$ 이하의 위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 $50cm$ 이하의 위반	경고 (경고)	1월 (경고)	3월 (1월)
○ $50cm$ 초과 $1m$ 이하의 위반	○ $50cm$ 초과 $1m$ 이하의 위반	경고 (경고)	1월 (1월)	3월 (3월)
○ $1m$ 초과위반	○ $1m$ 초과위반	경고 (경고)	3월 (1월)	6월 (3월)
④ 기타 사항				
가. 건축선 침범	3월 (1월)	6월 (3월)	1년 (6월)	
나.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구조변경 등	1월 (경고)	3월 (1월)	6월 (3월)	
다. 배치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1월 (경고)	3월 (1월)	
라.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경우	1월 (경고)	3월 (1월)	6월 (3월)	
마. 기타	경고 (경고)	1월 (경고)	3월 (1월)	